


~~~~~

| 구 분                | 미국     | 일본    | 대만     | 한국 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|
| <b>NOx</b>         |        |       |        |        |
| 총배출량(천톤)           | 19,578 | 1,476 | 748    | 1,152  |
| kg/person          | 75.08  | 11.75 | 35.12  | 25.68  |
| kg/km <sup>2</sup> | 2,110  | 3,907 | 20,778 | 11,601 |

| 구 분                | 미국    | 일본    | 대만     | 한국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|
| <b>TSP</b>  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|       |
| 총배출량(천톤)           | 2,853 | 117   | 636    | 405   |
| kg/person          | 10.84 | 1.41  | 29.87  | 9.03  |
| kg/km <sup>2</sup> | 304   | 468.5 | 17,672 | 4,078 |

## 2. 대기환경기준 및 배출허용기준 비교

### 1) 주요국의 대기환경기준

우리나라의 경우 대기환경기준의 장기 기준은 연 평균치로 설정되어 있고, SO<sub>2</sub>, TSP 등에 대한 단기기준은 1일 평균치로 되어 있어, 선진국에 비해 약한 환경기준이 설정되어 있다.

그러나 국가간의 환경기준 수준의 비교는 오염정도를 측정할 때의 평균화 시간 차이 등 오염측정법이 각국간에 차이가 있어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.

### 2) 주요국의 배출허용기준 비교

미국,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의 배출규제는 지역별·연료별 차등규제의 실시, 신규시설과 기존시설에 대한 차별, 제거효율을 고려한 기술규제의 실시, 예방적 차원에서의 규제라는 특징을 가진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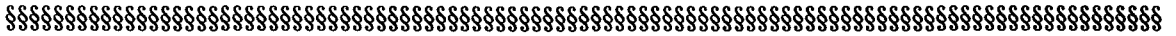
### < 황산화물 배출허용 기준 >

- 미국 : 배출시설에 사용되는 연료의 종류, 특성 및 설비의 종류에 따라 배출가스 중의









배출부과금제도는 배출허용기준과 연료사용 규제를 준수하는 경우에도 다시 별도의 비용을 부과하여 사업장에 대해 중복적 규제를 가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환경비용을 유발시킨다. 또한 그 비용이 가격에 반영되어 결국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문제점이 있다.

## 2. 대기환경정책의 개선방안

향후 대기환경규제 제도의 개선은 효율성 원칙, 오염자 부담원칙, 형평성 원칙, 비중복성 및 단순화 원칙 등에 의거하여 수립·평가되어야 한다.

이를 위해 기업의 참여확대 및 지원체계를 활성화하고 행정절차의 질과 규제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. 또한 직접규제 일변도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시장기능을 통한 문제 해결 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. 장기적으로 총량규제를 도입·실시하고 연료사용 규제 등 여타규제는 폐지하여야 할 것이다.

보다 구체적으로 대기환경 규제별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.

### 1) 배출시설의 신·증설

우선 현행 배출시설의 신·증설에 대한 사전신고·허가제를 배출시설에 대한 현황 파악 차원에서 연간단위로 해당 관청에 사후 통보 또는 신고하는 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.

### 2) 환경기준 및 배출허용기준

중앙정부는 장기적인 환경기준과 최소한의 배출 기준만을 설정하고 세부적인 기준은 지자체에 일임하여 지역의 특성 및 환경용량이 잘 반영된 배출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. 또한 배출허용 기준의 준수여부 파악은 현행 배출허용 기준의 개념을 순간 농도에서 평균 농도 개념으로 전환하여 공정의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.

### 3) 연료사용규제

대규모시설의 경우 연료사용 규제를 폐지하고 탈황·탈질시설 등 방지사설의 설치를 통한 배출저감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. 반면 소규모시설에 대해서는 현재의 LNG사용 의무화 또는 저황탄·저황유 사용 의무화 등 연료사용규제를 실시하여 오염물질 배출저감 효과를 제고하여야 한다. <끝>